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환경연대 사무처 064-753-0844, js@jejungo.org

제 목 **[논평]** 도시공원 민간특례 하수처리 논란, 제주도는 하수처리 분산화 원칙을 지켜야

날 짜 2023.08.16. 수요일 (총2쪽)

논 평

<도시공원 민간특례 하수처리 논란?>

제주도는 하수처리 분산화 원칙 지켜야

중부공원 민간특례에는 자체처리토록 하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연계처리?
하수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특정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는 처리방식은 옳지 않아
하수는 자체처리로, 자체처리 하수는 하천에 방류말고 철저히 재사용해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하수처리 문제로 시끄럽다. 논란은 아주 오래전에 예견되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본회는 이미 포화된 하수처리장 현실을 외면하고, 언제 완공될 지 모르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기대어 사업을 허가하는 제주도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수차례 지적하였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출 수 없게 되자 끓았던 문제가 터졌다.

제주도가 2022년 12월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은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 설치 위주로 처리하는 등 공공하수도로 유입

최소화'를 첫 번째 하수처리 적정가동률 초과의 대책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본회가 이에 따라 2023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를 통해 자체처리 원칙에 대해 문의한 결과,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와 제주도 도시계획과 모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역세척수 등에 한해서만 연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원칙에 대하여,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연계처리를 제주도가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제주도는 무책임하고 안일하게도 아파트의 준공 시기와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 시기를 맞추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도저히 완공되지 않을 것이 확인해졌다. 그렇다면, 어쨌든 사업자는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왕 시설이 갖추어 졌으면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 후에도 계속 자체처리하면 된다.

현재 제주도의 하수처리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모두 한군데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에서 월류한 하수가 바다와 하천으로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빌딩 등은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리하여 중수도와 관개 및 청소용수로 재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미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화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도 예외일 수 없다. 오등봉공원 사업자는 하수처리장 증설시기에 맞춰 연계처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이라고 조치계획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그 약속은 지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하수를 자체처리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재사용해야 할 것이다.

2023. 8. 1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 [31189] [자치·행정] 하수 자체처리 관련 문의
[\[원문보기\]](#)

질의

제목	[31189] [자치·행정] 하수 자체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박ㅇㅇ	작성일	2023-03-06 14:25:37
조회	26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자치도>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제주시>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 박유라입니다.
 2022.12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의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개정)'
 2페이지의 4.개선대책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 내용 1번 하단을 보면, 자체처리 사례로
 드림타워(2,720톤), 오등봉공원(1,590톤), 중부공원(713톤)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드립니다.

1.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하수는 어떻게 자체처리 한다는 것인지요?
 (전체 오수발생량중 몇 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기술 요청드립니다)

2. 해당 자체처리안에 절수기기 설비로 인한 감량이 포함되나요?
 현재, 본 단체가 과거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절수기 설비 설치는 수도법에 따라 현재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하수절감량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이중 절감이라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제주도상하수도본부의 의견내용을 보면, 해당 시설들의 하수유입시기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2025.12) 이후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제주하수처리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준공보다 늦어지면, 오등봉민간특례사업의 하수는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오수 유입이 가능하다는 상하수도본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요?

1,2,3에 대한 각각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 목록

작성자	하수도부 (064-750-7956)	답변일	2023-03-16
○ 3번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장 홍경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대비 포화상태로, 사업대상지 발생하수를 공공하수도를 통해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자 측에서 제출된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내 발생 하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역세척수 등에 한하여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한 실정으로 추후 사업자가 사업부지내 발생하수를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사업 진척상황 및 준공시기, 펌프장 증설 등 종합 감안하여 별도 연계처리 여부를 검토 할 계획으로 우리 본부와 협의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064-750-7956, 김준용)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도시계획과 (064-728-3253)	답변일	2023-03-15
○ 1,2번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김영학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는 공원, 비공원시설을 합쳐 오동봉공원의 경우 1,870m³/일, 중부공원의 경우 780m³/일로 자체 처리할 계획이며,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계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절수기기 설비로 인한 감량은 자체 처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064-728-325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번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장 홍경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대비 포화상태로, 사업대상지 발생하수를 공공하수도를 통해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자 측에서 제출된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내 발생 하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역세척수 등에 한하여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한 실정으로 추후 사업자가 사업부지내 발생하수를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사업 진척상황 및 준공시기, 펌프장 증설 등 종합 감안하여 별도 연계처리 여부를 검토 할 계획으로 우리 본부와 협의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064-750-7956, 김준용)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처리장 확장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조치계획을 밝힌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자
[크게보기]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7-229

7.3.1

구분	협 의 의 건	조치 계획	반영 시기	반영 여부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부	○ 사업대상지 내 하수처리는 평문펌프 상운 거쳐 제주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이나 - 평문펌프장의 처리용량 및 시설확장이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분산처리를 위해 사업부지 내 펌프장 및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점(오라오거리 또는 애항운동장 남측 도로변)까지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용담펌프장 확장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가 부담으로 설치(확정)하거나 설계(확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확충 후 위 사업과 관련한 하수도 분야 협의 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여야 함. ○ 공공하수처리장까지 하수를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구경 및 경사도를 검토(사업자 부담으로 관보진단 관경·중개펌프상·하수처리장 확장 비용 부담)하여 실시 설계시 사전에 하수도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table><tr><th>구분</th><th>일회대 오수량 (m³/일)</th><th>지리 수량 (m³/일)</th><th>방생 오수량 (m³/일)</th></tr><tr><td>1.공원시설</td><td>545</td><td>55</td><td>600</td></tr><tr><td>2.비중원시설</td><td>1,426</td><td>142</td><td>1,568</td></tr><tr><td>계</td><td>1,971</td><td>197</td><td>2,168</td></tr></table> <table><tr><th>구분</th><th>일회대오수량(m³/일)</th></tr><tr><td>1.비중원시설</td><td>1,426</td></tr><tr><td>2.중수처리시설</td><td>500</td></tr><tr><td>3.외부인구유입률</td><td>40%</td></tr><tr><td>4.하수처리장증가량</td><td>(1,426-500)×0.4=370</td></tr></table>	구분	일회대 오수량 (m³/일)	지리 수량 (m³/일)	방생 오수량 (m³/일)	1.공원시설	545	55	600	2.비중원시설	1,426	142	1,568	계	1,971	197	2,168	구분	일회대오수량(m³/일)	1.비중원시설	1,426	2.중수처리시설	500	3.외부인구유입률	40%	4.하수처리장증가량	(1,426-500)×0.4=370	실시계획 인가시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일부 반영
		구분	일회대 오수량 (m³/일)	지리 수량 (m³/일)	방생 오수량 (m³/일)																									
		1.공원시설	545	55	600																									
		2.비중원시설	1,426	142	1,568																									
		계	1,971	197	2,168																									
		구분	일회대오수량(m³/일)																											
		1.비중원시설	1,426																											
		2.중수처리시설	500																											
		3.외부인구유입률	40%																											
		4.하수처리장증가량	(1,426-500)×0.4=370																											
○ 사업대상지에서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점(애항운동장 남측 도로변)까지 별도 차집관로 배설 및 용담펌프장 확장 시설비용을 납부 하겠으며, 사업부지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점까지 지연유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협의후 진행하겠음.																														
○ 농공하수처리상까지 구경 및 경사도를 검토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관보진단, 관경·중개펌프상·하수처리장 확장비용을 부담 하겠으며, 실시설계시 사전에 하수도부의 협의하겠음.																														
실시계획 인가사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반영																														

- 3 -

<그림 7.3.1-11> 상하수도본부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사본-3

7 - 229